

2020.02.03

## 『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』 안내

### I. 개요

관세청 내 2020년 개정 및 신설된 관세 관련 법령 등을 발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

### II. 주요사항

#### 1. 개정 사유

-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마련
- 수출입업체의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정 정비
-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

#### 2. 개정 내용

##### □ 중소·중견 기업의 지원확대를 통한 수출 활력 제고

##### 1) 중소·중견 기업에 대한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지원 신설

(관세법 §173조 및 §329조 - 시행 : '20.7.1)

- **중전** : 세관검사장 검사비용(채취, 운반 등)은 화주가 부담
- **변경** :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**예산 범위 내 중소,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검사비용 지원 가능**

- 검사비용 지원 신청서 접수, 지원 요건 및 금액 심사에 관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및 필요 경비 지원 가능한 근거 마련

##### 2) 적법한 물품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범위 확대 (관세법 §246조의2 - 시행 : '20.1.1)

- **중전** :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·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대상
- **변경** : 관세법에 규정된 모든 물품 검사로 범위 확대

2020.02.03

## 『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』 안내

### II. 주요사항

#### 2. 개정 내용

□ 중소·중견 기업의 지원확대를 통한 수출 활력 제고

3) 수출물품에 대한 파출검사 수수료 면제 (관세법 §247조 - 시행 : '20.4.1)

- **종전** : 보세창고의 경우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 경우
- **변경** : 검사대상이 수출물품인 경우 검사 수수료 면제 대상 추가

4) 중소·중견기업 보세공장의 시설재 관세 감면 (조세특례제한법 §118조 제1항 제22호)

- 시행 : '20.4.1 ('22.12.31 까지 수입신고분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)
- 중소·중견기업의 제조, 가공 등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기계 및 장비 중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인 경우 관세 감면

5) 전자상거래 업체 수출 지원 및 활성화

(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§35조 - 시행 : '19.12.31)

- '전자상거래 수출물품' 잠정수출신고 대상 물품 추가
- 가격 확정 신고 기간 연장
- 종전** : '적재 완료일로부터 60일 경과하기 전'
- 변경** : '적재 완료일로부터 180일 경과하기 전'
-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인 경우 수출신고 전 '신고번호 부여' 요건 삭제

6) 특정물품 면세 대상 추가 (관세법 §93조 제18호 - 시행 : '20.4.1)

- 보석의 원석 및 나석의 특정물품 면세 대상 추가

2020.02.03

## 『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』 안내

### II. 주요사항

#### 2. 개정 내용

##### □ 중소·중견 기업의 지원확대를 통한 수출 활력 제고

##### 7) 맥주·탁주에 대한 주세율 변경 (주세법 §21조, §22조 - 시행 : '20.1.1)

- 맥주·탁주의 수입신고 가격 → 수량 과세표준 변경
- 세율 변경

	종전	변경
탁주	5 %	41.7원 / 리터
맥주	72 %	830.3원 / 리터

##### - 생맥주 세율 경감 조항 신설

- \* 대상 : 별도 추출 장치를 사용하며 8ℓ 이상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맥주
- \* 세율 : 664.2 원 / 리터
- \* 적용 기한 : '20.1.1 ~ '21.12.31

##### 8) 자동차 개별소비세 변경

(조세특례제한법 §109조의2,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§2조의2 - 시행 : '20.1.1)

- 노후 경유차 → 노후 자동차로 변경함에 따라 노후 자동차 교체 지원 단, 노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고,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신규 승용차(경유차 제외)를 구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
-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3.5 % → 5 % 로 탄력세율 적용 환원

##### 9)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 (조세특례제한법 - 시행 : '20.1.1)

- 수입 금지금에 대한 관세면제 기한 '21.12.31 연장 (§126조의 7)
-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관,부가세 면제 기한 '22.12.31 연장 (§140조)
-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자재의 관세 감면 기한 '21.12.31 연장 (§118조)

2020.02.03

## 『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』 안내

### II. 주요사항

#### 2. 개정 내용

##### □ FTA 활용 적극 지원을 통한 수출입업체의 납세 부담 완화

##### 1) 협정세율 적용 우선 순위 개정 (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(이하 'FTA 특례법') §5조 - 시행 : '20.1.1)

- '공중도덕 보호, 인간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, 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' 협정관세의 세율보다 우선 적용 추가

- **중전** : 협정관세의 세율이 『관세법』에 따른 적용 세율 보다 낮은 경우 적용

**변경** : 『관세법』에 따른 적용 세율이 같은 경우 수입자 신청 시 협정세율 적용

##### 2)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세액 경정 시 협정세율 사후적용 신청 기한 연장

(FTA특례법 §9조 - 시행 : '20.1.1)

-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

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 ~ 45일 이내 사후 적용 신청 허용

##### 3) FTA 협정세율 적용 관련 규정 정비 (FTA특례법 §14조, §46조, §44조 - 시행 : '20.1.1)

- **중전** :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 오류로 납부한 세액의 과부족을 알게 된 경우 정정, 보정신청,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함 or 과태료 부과

**변경** :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 또는 정정 선택 사항 변경 및 과태료 폐지

- 원산지증명서 "과실" 발급에 대한 용어 추가로 고의범과 과실범 구분

##### 4) 원산지(포괄)확인서 대상 확대 (원산지(포괄)확인서 고시 서식 16)

- 시행 :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 이후

- 제주특별자치도청이 원산지상품으로 확인한 품목 및 인증서인 경우 원산지(포괄)확인서로 추가 인정

2020.02.03

## 『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』 안내

### II. 주요사항

#### 2. 개정 내용

##### □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통한 관세행정 구현

##### 1)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

(관세법 §41조 삭제, §42조, FTA 특례법 §36조 - 시행 : '20.1.1)

##### - 종전 : (1) 납부고지 전 : 납부불성실가산세

미납세액 \* (납부기한의 다음날 ~ 수정신고일 또는 납부고지일) \*  
1일 1만분의 25 (0.025%)

##### (2) 납부고지 후 : 가산금

미납세액 \* 3% + 매 1개월마다 월 100분의 75 (0.75%)

##### - 변경 :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(1) 과 (2) 를 합친 금액

(1) 미납세액 \* (납부기한의 다음날 ~ 납부일) \* 1일 1만분의 25 (0.025%)

단,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기간 제외

(2) 미납세액 \* 3%

(관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)

##### 2) 보정신청 시 포괄신고 대상 포함 (납세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§10조, 11조)

- 시행 : '19.12.26

- 원칙 : 최초 납세신고 할 때의 세관장에게 각각 변경 신고

예외 : **보정신청 [추가] 및 수정신고 시** 통관지 세관이 2개 이상인 경우,  
하나의 세관에 일괄하여 변경 신고 가능

-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가 정산 결과 등에 따라 부족세액을 보정신청,  
수정신고 시 정산 담당 세관에 일괄 변경신고 허용 규정 추가

2020.02.03

## 『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』 안내

### II. 주요사항

#### 2. 개정 내용

##### □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통한 관세행정 구현

##### 3)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및 편의 제고 등을 위한 규정 정비

-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 및 환경, 법 위반 동기 결과 등 고려하여 통고처분 면제 가능 근거 신설 (단, 벌금 30만원 이하 및 '물수품 + 추징금' 100만원 이하)  
(관세법 §311조 - 시행 : '20.1.1)
-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(관세법 §118조 - 시행 : '20.7.1)
-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근거 마련 (관세법 §196조 - 시행 : '20.7.1)
- 국제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일시 반출하는 운동 관련 물품 등 재수입 면세 대상 추가 (관세법 §99조 - 시행 : '20.4.1)

##### □ 공정한 대외 경제 질서 확립

##### 1)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추가

(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- 시행 : '19.12.31)

- **종전** :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HS 87류 중고차
- **변경** : 플라스틱 폐기물(HS 3915호) 및 생활폐기물(HS 3825호) 대상 추가

##### 2) 임의적 몰수·추징 대상 확대 (관세법 §282조 - 시행 : '20.1.1)

- 미신고·허위신고 **수출입물품** 중 해당 물품
  - (1) 보세구역에 반입신고 후 반입한 외국 물품
  - (2)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 외 장소에 장치한 외국 물품
  - (3) **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~제5호 (생활, 사업장, 지정, 의료폐기물 등)**
  - (4) **그 밖의 몰수 실익이 없는 물품**

2020.02.03

## 『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』 안내

### II. 주요사항

#### 2. 개정 내용

##### □ 공정한 대외 경제 질서 확립

##### 3) 체계적 관리·감독 및 형사적 제재 강화

- 연대납세의무자 및 관세포탈죄 대상 내 '구매대행업자' 추가 단, 화주로부터 수입 시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함 (관세법 §19조 제5항, §270조 - 시행 : '20.4.1)
- 관세 고액·상습체납자 감치명령제도 신설 (관세법 §116조의4 - 시행 : '20.1.1)
- 보세판매장 현장인도 제도 상향 입법 (관세법 §196조의2 - 시행 : '20.7.1) 및 현장인도 제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추가 (관세법 §277조 - 시행 : '21.1.1)
-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주무부처에 안전성 검사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및 협업검사센터 설치 근거 마련 (관세법 §246조의3 - 시행 : '20.7.1)
-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산정 시 매장별 매출액 → **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기준** 특허수수료율 적용 (관세법 §176조의2 - 시행 : '20.1.1)
- 보세운송업자 등에 '구매대행업자' 추가 (관세법 §222) - 시행 : '21.7.1

◇ '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' [붙임]

◇ 시행일 : 각 조항별 시행일 상이

#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

---

50  $\frac{1970}{2020}$

KOREA  
CUSTOMS SERVICE



관세청  
Korea Customs Service



# 목 차

## 중소·중견기업의 지원확대를 통한 수출 활력의 제고

① 중소기업에 대한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의 국가 지원 신설 등	p.1
② 적법한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범위 확대	p.2
③ 수출물품에 대한 파출검사 수수료 면제	p.3
④ 잠정수출신고 대상에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추가 및 가격확정신고 기간 연장	p.4
⑤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 요건 삭제	p.5
⑥ 중소기업 보세공장 시설재 관세 감면	p.6
⑦ 보석의 원석(原石) 및 나석(裸石)의 특정물품 면세대상 추가	p.7
⑧ 수입 금지금에 대한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	p.8
⑨ 해저광물자원개발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	p.9
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의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	p.10
⑪ 맥주, 탁주에 대한 주세율 변경	p.11
⑫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	p.12
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환원	p.13

## FTA 활용 적극 지원으로 수출입업체의 납세부담 완화

⑭ 협정세율 적용 우선 순위 개선	p.14
⑮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세액경정시 협정세율 사후적용 신청 기한 연장	p.15
⑯ 원산지증빙서류 오류에 따른 경정청구를 선택사항으로 변경	p.16
⑰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벌칙규정 명확화	p.17
⑱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(포괄)확인서 대상 확대	p.18

##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통한 공평하고 포용력 있는 관세행정 구현

⑲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	p.19
⑳ 통고처분 면제 근거 신설	p.20
㉑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근거 신설	p.21
㉒ 국제경기대회 물품의 재수입 면세대상 추가	p.22
㉓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	p.23
㉔ 수정신고 및 보정신청 시 포괄신고 대상 확대	p.24

##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공정한 대외 경제 질서 확립

25	밀수출입 예비범에 대한 몰수·추징 근거 신설 및 임의적 몰수·추징 대상 확대	p.25
26	구매대행자 연대납세의무부과 및 위반시 관세포탈죄 적용	p.26
27	관세 고액·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제도 신설	p.27
28	보세판매장 현장인도 제도 상향 입법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	p.28
29	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추가	p.29
30	안전성검사 요청권한 신설 등 운영방안 개선	p.30
31	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산정	p.31
32	구매대행업체 등록제도 신설	p.32

# 1 중소기업 기업에 대한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의 국가 지원 신설 등

(통관기획과, 042-481-785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세관검사장 검사비용은 화주가 부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·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</li> <li>• <u>&lt; 신설 &gt;</u></li> </ul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<u>중소·중견기업의</u>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은 국가가 지원 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&lt; 좌 동 &gt;</li> <li>• 다만, 국가는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*로서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검사비용 지원 가능</li> <li>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함</li> </ul>
<p><input type="checkbox"/> <u>&lt; 신설 &gt;</u>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<u>일부 위탁</u> 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*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및 필요경비 지원 가능</li> <li>* 신청서 접수, 지원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</li> </ul>

○ ( 기대효과 )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수출입 기업에 대한 자금부담 경감에 기여

○ ( 시행일 ) '20. 7. 1.( 「관세법」 제173조 및 제329조 개정)

## ② 적법한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범위 확대

(통관기획과, 042-481-785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물품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<u>제 246조(물품의 검사)에 따른</u>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</li> </ul>	<p>□ 물품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<b>범위 확대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<u>관세법에</u>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</li> </ul>

○ ( 기대효과 ) 관세법에 규정된 모든 물품검사로 손실보상의 범위를 확대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

○ ( 시행일 ) '20. 1. 1.( 「관세법」 제246조의2 개정)

### ③ 수출물품에 대한 파출검사 수수료 면제

(통관기획과, 042-481-7857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input type="checkbox"/> 수출입물품 검사수수료 면제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보세창고의 경우 신고인이 운 영인과 다를 경우</li> <li>• &lt; 신 설 &gt;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 수출입물품 검사수수료 면제대상 <b>확대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&lt; 좌 동 &gt;</li> <li>• <u>검사대상이 수출물품인 경우</u></li> </ul>

○ ( 기대효과 )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 수수료 폐지로 인한 수출기업 지원

○ ( 시행일 ) '20. 4. 1.( 「관세법」 제247조 개정)

#### 4] 잠정수출신고 대상에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추가 및 가격확정 신고 기간 연장

(통관기획과, 042-481-7857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input type="checkbox"/> 잠정수출신고 대상 물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. 가스</li> <li>• 2. 액체</li> <li>• 3. 전기</li> <li>• 4. HS 제50류부터 제60류까지 중 직물 및 편물</li> <li>• 5. HS 제71류부터 83류까지의 귀금속 및 비금속제 물품</li> <li>• 6. 그 밖에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</li> <li>• &lt; 신 설 &gt;</li> </ul> <input type="checkbox"/> 가격 확정 신고기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적재완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 하기 전까지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 잠정수출신고 대상 물품 <u>추가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&lt; 좌 동 &gt;</li> <li>• <u>전자상거래 수출물품</u></li> </ul> <input type="checkbox"/> 가격 확정 신고기간 <u>연장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적재완료일로부터 <u>180일</u>이 경과 하기 전까지</li> </ul>

○ ( 기대효과 ) 전자상거래 업체 수출지원 및 수출정정 부담 완화

○ ( 시행일 ) '19. 12. 31. 「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35조 개정

## 5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 요건 삭제

(통관기획과, 042-481-7857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 요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신고번호를 부여받아야함</li> </ul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<u>신고 요건 삭제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&lt; 삭제 &gt;</u></li> </ul>

○ ( 기대효과 )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및 활성화

○ ( 시행일 ) '19. 12. 31. 「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 삭제

## 6 중소기업·중견기업 보세공장의 시설재 관세 감면

(수출입물류과, 042-481-782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input type="checkbox"/> < 신 설 >	<input type="checkbox"/> 중소기업 보세공장 시설재 관세 감면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중소기업 보세공장이 제조·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<u>기계 및 장비</u>로서 <u>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</u>에 대한 관세 경감</li> </ul>

○ ( 기대효과 ) 중소기업의 보세공장 이용률 제고 및 가공무역 지원

○ ( 시행일 ) '20. 4. 1.(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18조제1항제22호 신설)

\* 적용기한 : '22. 12. 31. 까지 수입신고분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



## 7 보석의 원석(原石) 및 나석(裸石)의 특정물품 면세대상 추가

(통관기획과, 042-481-7856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input type="checkbox"/> 특정물품 면세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&lt; 신 설 &gt;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 특정물품 면세대상 <b>확대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보석의 원석(原石) 및 나석(裸石) 추가</li> <li>* 보석의 원석 및 나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</li> </ul>

○ ( 기대효과 ) 보석 가공 산업의 활성화 및 세원양성화

○ ( 시행일 ) '20. 4. 1.( 「관세법」 제93조제18호 신설)

## 8 수입 금지금에 대한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

(통관기획과, 042-481-7856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수입 금지금에 대한 관세면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금지금* 공급사업자가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관세 면제</li> <li>* 금괴(덩어리)·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.5%이상인 금</li> <li>● 적용기한 : '19. 12. 31.</li> </ul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수입 금지금에 대한 관세면제 <u>기한 연장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&lt; 좌 동 &gt;</li> <li>● 적용기한 : '21. 12. 31.</li> </ul>

○ ( 기대효과 ) 금 밀수행위를 억제하는데 기여

○ ( 시행일 ) '20. 1. 1.(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의7 개정)

## 9] 해저광물자원개발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

(통관기획과, 042-481-7856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<input type="checkbox"/>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관세면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·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</li> <li>• 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그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·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</li> <li>• 적용기한 : '19. 12. 31.</li> </ul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관세면제 <u>기한 연장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&lt; 좌 동 &gt;</li> <li>• &lt; 좌 동 &gt;</li> <li>• 적용기한 : '22. 12. 31.</li> </ul>

○ ( 기대효과 ) 적극적인 국내대륙붕 개발을 통해 석유 및 석유가스 자급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도모

○ ( 시행일 ) '20. 1. 1.(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40조 개정)

##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의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

(통관기획과, 042-481-7856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중소·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, 이용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에 대한 관세 감면</li> <li>적용기한 : '19. 12. 31.</li> </ul>	<p>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<u>기한 연장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&lt; 좌 동 &gt;</li> <li>적용기한 : '21. 12. 31.</li> </ul>

○ ( 기대효과 )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중소·중견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

○ ( 시행일 ) '20. 1. 1.(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18조 개정)

## 11 맥주, 탁주에 대한 주세율 변경

(심사정책과, 042-481-7754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input type="checkbox"/> 맥주·탁주 과세표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수입신고 <u>가격</u>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 맥주·탁주 과세표준 <u>변경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수입신고 <u>수량</u></li> </ul>
<input type="checkbox"/> 맥주·탁주 세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탁주 : 5%</li> <li>맥주 : 72%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 맥주·탁주 세율 <u>변경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탁주 : <u>41.7원 / 리터</u></li> <li>맥주 : <u>830.3원 / 리터</u></li> </ul>
<input type="checkbox"/> < <u>신 설</u> >	<input type="checkbox"/> <u>생맥주</u> 세율 경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대상) 별도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ℓ 이상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맥주</li> <li>(세율) 664.2원 / 리터            * 맥주 세율의 20% 경감</li> <li>(적용기한) '20. 1. 1. ~ '21. 12. 31.</li> </ul>

○ ( 기대효과 ) 고품질 주류 개발 및 생산 확대 등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

○ ( 시행일 ) '20. 1. 1 시행(「주세법」 제21조 및 제22조 개정)

## 12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

(심사정책과, 042-481-7754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input type="checkbox"/> 지원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'08.12.31. 이전 신규등록(최초등록)된 노후 경유차를 '18.6.30.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</li> <li>•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,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신규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등록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 지원요건 <u>연장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'<u>09.12.31.</u> 이전 신규등록(최초등록)된 노후 자동차를 '<u>19.6.30.</u>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</li> <li>• 노후 <u>자동차</u>를 말소등록하고,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신규로 승용차(<u>경유차 제외</u>)를 구입하여 등록</li> </ul>
<input type="checkbox"/> 세제혜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개별소비세 등 70% 감면 (한도 143만원*)</li> <li>* 경감한도 : 개별소비세 100만원, 교육세 30만원, 부가세 13만원</li> <li>- 노후 경유차 1대당 신차 1대 지원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 세제혜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&lt; 좌 동 &gt;</li> <li>- 노후 <u>자동차</u> 1대당 신차 1대 지원</li> </ul>
<input type="checkbox"/> 시행기간: '19. 1. 1.~'19. 12. 31.	<input type="checkbox"/> 시행기간: '20. 1. 1.~'20. 6. 30.

○ ( 기대효과 ) 노후 자동차 교체 지원

○ ( 시행일 ) '20. 1. 1. (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9조의2 개정)

※ '20. 1. 1.~ 6. 30.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

### 13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환원

(심사정책과, 042-481-7754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: 3.5%</li> </ul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에 대한 탄력세율 <u>적용기한 만료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: <u>5%</u></li> </ul>

○ ( 기대효과 ) 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한 탄력세율 적용의 환원

○ ( 시행일 ) '20. 1. 1.( 「개별소비세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제6호)

## 14 협정세율 적용 우선 순위 개선

(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, 042-481-321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협정관세의 세율이 「관세법」에 따른 적용세율 보다 낮은 경우 협정관세의 세율을 우선 적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다만, 덤핑방지·상계·보복·긴급·특정국물품 긴급·농림축산물특별긴급관세 세율은 협정관세의 세율보다 우선 적용</li> </ul> <p>□ 협정관세의 세율이 「관세법」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 「관세법」에 따른 적용세율을 우선하여 적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u>&lt; 신 설 &gt;</u></li> </ul>	<p>□ &lt; 좌 동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다만, 덤핑방지·상계·보복·긴급·특정국물품 긴급·농림축산물특별긴급관세·<u>공중도덕 보호 등을 위한 조정관세</u> 세율은 협정관세의 세율보다 우선 적용</li> </ul> <p>□ &lt; 좌 동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다만, <u>협정관세의 세율이 「관세법」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은 경우에는 수입자가 신청하면 협정관세의 세율을 적용</u></li> </ul>

○ ( 기대효과 ) 조정관세의 실효성 강화 및 납세자의 FTA 협정세율 선택권 보장

○ ( 시행일 ) '20. 1. 1.(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 제5조 개정)



## 15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세액경정시 협정세율 사후적용 신청 기한 연장

(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, 042-481-321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</p> <p>• <u>&lt; 신 설 &gt;</u></p>	<p>□ &lt; 좌 동 &gt;</p> <p>• 다만, <u>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 적용 신청을 허용</u></p>

○ ( 기대효과 ) 납세자의 FTA 협정세율 적용 권리구제

○ ( 시행일 ) '20. 4. 1.(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 제9조 개정)

## 16 원산지증빙서류 오류에 따른 경정청구를 선택사항으로 변경

(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, 042-481-321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이 <u>과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</u> 세액정정·세액보정 신청, 수정신고 또는 <u>경정청구를 하여야 함</u></p> <p>□ 경정청구 및 납세신고세액 과다시 세액정정을 <u>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부과</u></p>	<p>□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<u>세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</u> <u>세액정정·세액보정 신청,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며,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</u> <u>경정청구 또는 세액정정을 할 수 있음</u></p> <p>□ 경정청구 및 납세신고세액 과다시 세액정정을 <u>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부과 폐지</u></p>

○ ( 기대효과 ) 납세자의 FTA 협정세율 적용 권리구제

○ ( 시행일 ) '20. 1. 1.(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 제14조, 제46조 개정)

## 17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벌칙규정 명확화

(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, 042-481-321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input type="checkbox"/>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거나 작성·발급한 자: 2,000만원 이하의 벌금	<input type="checkbox"/> < 좌 동 >
<input type="checkbox"/> <u>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·발급한 자: 300만원 이하의 벌금</u>	<input type="checkbox"/> <b>과실로</b> <u>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·발급한 자: 300만원 이하의 벌금</u>

○ ( 기대효과 ) 고의범과 과실범 구분으로 법적 혼선 방지

○ ( 시행일 ) '20. 1. 1.(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 제44조 개정)

## 18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(포괄)확인서 대상 확대

(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, 042-481-321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발행한 품질 인증서 등을 관세청장이 원산지(포괄)확인서로 인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6개 기관이 품질 인증한 1,146개 품목의 생산자는 원산지(포괄)확인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해당 품목에 대해 발행된 15종의 인증서를 수출자에게 제공시 원산지(포괄)확인서로 인정</li> <li><u>&lt; 신 설 &gt;</u></li> </ul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&lt; 좌 동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&lt; 좌 동 &gt;</li> <li><u>제주특별자치도청이 원산지상품으로 확인한 품목 및 이에 대한 인증서를 원산지(포괄)확인서로 추가 인정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발급기관 : 제주특별자치도청</li> <li>인정서류 :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품 품질인증서</li> <li>품목 : 47개 제주 지역특산품</li> </ul> </li> </ul>

○ ( 기대효과 ) 지역특산품의 FTA 활용 수출 증대

○ ( 시행일 ) 「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 개정 이후

※ 「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(포괄)확인서 고시」 서식16 신설

## 19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

(심사정책과, 042-481-7812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&lt; 신 설 &gt;</p>	<p>□ 납세자보호관 신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자격) 관세·법률·재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</li> <li>※ 단, 세관공무원 및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외</li> <li>• (직무) 고충민원 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총괄 및 납세자 보호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감독</li> </ul> <p>□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설치) 관세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설치</li> <li>• (구성) 18명 이내의 위원(위원장 1명 포함)</li> <li>• (심의대상) ①관세조사범위 확대, ②관세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등</li> </ul> <p>□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, 중지 요청 등 불복절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설치) 납세자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(1차 세관, 2차 관세청) →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→ 결과 통지</li> </ul>

○ ( 기대효과 )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

○ ( 시행일 ) '20. 7. 1.( 「관세법」 제118조의2 ~ 제118조의5 신설)

## 20 통고처분 면제 근거 신설

(조사총괄과, 042-481-791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input type="checkbox"/> < 신 설 >	<input type="checkbox"/> 통고처분 면제 근거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,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, 범칙금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통고처분 면제 가능</li> <li>• 면제 대상 - 1), 2) 모두 충족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벌금 해당금액이 30만원 이하일 것</li> <li>2) 몰수품 가액과 추징금 합산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</li> </ol> </li> </ul>

○ ( 기대효과 )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받는 관세범인의 부담을 경감

○ ( 시행일 ) '20. 1. 1.( 「관세법」 제311조 개정)

## 21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근거 신설

(수출입물류과, 042-481-7637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input type="checkbox"/> < 신 설 >	<input type="checkbox"/>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도 보세관 매장에서 물품 판매 가능</li> </ul>

○ ( 기대효과 ) 여행객 편의 제고 및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효과

○ ( 시행일 ) '20. 7. 1.( 「관세법」 제196조 개정)

## 22 국제경기대회 물품의 재수입 면세대상 추가

(통관기획과, 042-481-7856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input type="checkbox"/> 재수입 면세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박람회, 전시회, 품평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물품</li> <li>• &lt; 신 설 &gt;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 재수입 면세대상 <u>추가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&lt; 좌 동 &gt;</li> <li>• <u>국제경기대회</u>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물품</li> </ul>

○ ( 기대효과 ) 국제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일시 반출하는 운동관련 물품 등에 대해 재수입 면세를 함으로써 원활한 국제경기 대회 및 행사 지원

○ ( 시행일 ) '20. 4. 1.( 「관세법」 제99조 개정)



## 23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

(세원심사과, 042-481-787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 분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납부고지 전 : 납부불성실가산세(㉠)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미납세액 × (납부기한의 다음날 ~ 수정신고일 또는 납부고지일) × 1일 0.025%</li> </ul> </li> <li>• (납부고지 후 : 가산금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미납세액 × 3%)(㉡)</li> <li>+ 매 1개월마다 월 0.75%(㉢)</li> </ul> </li> </ul>	<p>□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</p> <p>① <u>지연이자 성격(㉠+㉢)은 통합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미납세액 × (납부기한의 다음날 ~ 납부일) × 1일 0.025%</li> </ul> <p>② <u>체납에 대한 재재(㉡)는 유지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미납세액 × 3%</li> </ul> <p>※ 「국세기본법」, 「국세징수법」이 이미 개정('18.12.31)됨에 따라, 내국세와 관세간에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「관세법」 및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 개정</p>

○ ( 기대효과 )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하여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 방지 및 원활한 납세협력 기대

○ ( 시행일 ) '20. 1. 1( 「관세법」 제41조 삭제, 제42조 개정,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 제36조 개정)

※ 이 법 시행 전 납세신고분 등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 적용

## 24 수정신고 및 보정신청 시 포괄신고 대상 확대

(심사정책과, 042-481-7812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신고세액 변경 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원 칙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 상 : 수정신고, 보정신청</li> <li>- 최초 납세신고를 할 때의 세관 장에게 각각 변경신고</li> </ul> </li> <li>• 예 외 : 포괄신고 가능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상 : 수정신고</li> <li>- 통관지 세관 수개 인 경우, 어느 하나의 세관에 일괄하여 변경신고</li> <li>- &lt; 신 설 &gt;</li> </ul> </li> </ul>	<p>□ 신고세액 변경 방법 <u>간소화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&lt; 좌 동 &gt;</li> <li>• 예 외 : 포괄신고 가능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상 : 수정신고, <u>보정신청</u></li> <li>- &lt; 좌 동 &gt;</li> </ul> </li> <li>-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가 정산 결과 등에 따라 부족세액을 보정 신청·수정 신고하는 경우, 정산 담당 세관에 일괄 변경신고 허용</li> </ul>

○ ( 기대효과 ) 절차간소화를 통한 납부 편의 제고

○ ( 시행일 ) '19. 12. 26.(「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10조제2항  
및 제11조제1항 개정)

## 25 밀수출입 예비법에 대한 몰수·추징 근거 신설 및 임의적 몰수·추징 대상 확대

(조사총괄과, 042-481-7911 /국제조사팀, 02-510-1634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<input type="checkbox"/> 밀수출입에 대한 몰수·추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필수적 몰수·추징 대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출입 금지물품의 밀수출입한 자 (소유·점유 무관)</li> <li>- 물품을 미신고 수입한 자</li> <li>- 물품을 허위신고로 수입한 자</li> <li>- 밀수품을 취득한 자</li> </ul> </li> <li>• 임의적 몰수·추징 대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미신고·허위신고 <u>수입물품</u> 중 해당물품</li> <li>• 보세구역에 반입신고 후 반입한 외국물품</li> <li>•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</li> <li>• &lt; 신 설 &gt;</li> </ul> </li> </ul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밀수출입에 대한 몰수·추징 <u>대상 확대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필수적 몰수·추징 대상(<u>예비법 포함</u>)              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 좌 동 &gt;</p> </div> </li> <li>• 임의적 몰수·추징 대상 확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미신고·허위신고 <u>수출입물품</u> 중 해당물품</li> <li>• &lt; 좌 동 &gt;</li> <li>•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<u>규정에 따른 폐기물</u></li> <li>• <u>그밖에 몰수의 실익이 없는 물품</u></li> </ul> </li> </ul>

- ( 기대효과 ) - 밀수행위 억제 및 밀수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적 차단
  - 몰수의 실익이 없는 범칙물품의 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불합리함 개선

- ( 시행일 ) '20. 1. 1.( 「관세법」 제282조 개정)

## 26 구매대행자 연대납세의무부과 및 위반시 관세포탈죄 적용

(조사총괄과, 042-481-791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관세의 연대납세의무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수입신고 물품의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: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인 납세의무자</li> </ul> </li> <li>- &lt; 신 설 &gt;</li> </ul> <p>□ 관세포탈죄 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</li> </ul>	<p>□ 관세의 연대납세의무자에 <u>구매대행업자 추가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수입신고 물품의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&lt; 좌 동 &gt;</li> <li>- <u>화주로부터 수입 시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을 받고,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: 구매대행업자</u></li> </ul> </li> </ul> <p>□ 관세포탈죄 대상에 <u>구매대행업자 추가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</li> </ul> <p><u>(화주로부터 수입 시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의 세금을 받은 구매대행업자 포함)</u></p>

○ ( 기대효과 ) 해외직구 시 구매대행업자의 저가신고 등 관세탈루행위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강화 및 소비자 권리보호 기여

○ ( 시행일 ) '20. 4. 1.( 「관세법」 제19조제5항제1호다목 신설, 제270조 개정)

## 27 관세 고액·상습채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제도 신설

(세원심사과, 042-481-787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							
<p>&lt;신 설&gt;</p>	<p>□ <u>관세 고액·상습채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제도 신설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대상자) 관세청장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해 검사에게 감치 신청            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gray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감치 신청 요건&gt;</p> <p>① 관세(내국세 포함) 3회 이상 체납,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 경과, 합계 체납금액 2억원 이상</p> <p>② 체납된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</p> <p>③ 관세정보위원회의 의결로 감치 필요성 인정</p> </div> </li> <li>• (감치 신청 이후 절차)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를 결정            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: 10px 0;"> <table border="1" style="display: inline-table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 5px;">위원회 의결</td> <td style="padding: 0 5px;">→</td> <td style="padding: 2px 5px;">관세청장 감치 신청</td> <td style="padding: 0 5px;">→</td> <td style="padding: 2px 5px;">검사 감치 청구</td> <td style="padding: 0 5px;">→</td> <td style="padding: 2px 5px;">법원 감치 결정</td> </tr> </table> </div> </li> <li>• (기본권 보호 조치)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감치 신청 전,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 부여</li> <li>-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 불가</li> </ul> </li> </ul> <p>※ ‘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’(19.6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발표)에 따라 「국세징수법」 및 「관세법」 개정</p>	위원회 의결	→	관세청장 감치 신청	→	검사 감치 청구	→	법원 감치 결정
위원회 의결	→	관세청장 감치 신청	→	검사 감치 청구	→	법원 감치 결정		

○ ( 기대효과 )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·상습 체납자에 대해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

○ ( 시행일 ) '20. 1. 1 시행(「관세법」 제116조의4 신설)

※ 이 법 시행 이후 관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

## 28 보세판매장 현장인도 제도 상향 입법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

(수출입물류과, 042-481-7637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<input type="checkbox"/> 보세판매장 현장인도 제도*를 고시로 운용</p> <p>* 시내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내국 물품을 판매하고 현장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제도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&lt; 신 설 &gt;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<u>보세판매장 현장인도 제도 상향 입법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판매 현장에서 외국인에게 인도된 내국물품의 국외반출 의무 부과</li> <li>● 국외반출 여부 확인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에 자료 요청권한 부여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<u>현장인도 제한 위반자에 대한 제재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현장인도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는 자에 대해 현장인도 제한</li> <li>● 시내보세판매장 운영인이 현장인도 제한자에게 물품을 판매한 경우 과태료 부과</li> </ul>

○ ( 기대효과 ) 보세판매장에서 현장 인도 한 내국물품의 국내 불법유통 근절

○ ( 시행일 ) '20. 7. 1.( 「관세법」 제196조의2 신설)

'21. 1. 1.( 「관세법」 제277조 개정)

## 29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추가

(통관기획과, 042-481-7857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HS 87류 중고차</li> <li>• &lt; 신 설 &gt;</li> </ul>	<p>□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<u>대상 추가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&lt; 좌 동 &gt;</li> <li>• <u>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플라스틱 폐기물(HS 3915호 품목) 및 생활 폐기물 등(HS 3825호 품목)</u></li> </ul>

○ ( 기대효과 ) 폐플라스틱 불법수출 차단을 통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 및 국제무역질서 준수

○ ( 시행일 ) '19. 12. 31. 「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별표 11 개정

### 30 안전성검사 요청권한 신설 등 운영방안 개선

(통관기획과, 042-481-784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주무부처의 요청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만 안전성 검사 실시</p> <p>* 주무부처의 선택에 따른 협업검사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세청에서 주무부처에 <u>안전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신설</u></p> <p>*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해 관세청장은 세관장과 공동으로 주무부처에 안전성검사 시행 요청 가능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gray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>제226조(허가·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)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·승인·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·승인·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, 확인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/div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주요 <u>공항·항만에 협업검사센터 설치</u> 근거 마련</p> <p>* 인천협업검사센터('16.1~), 부산협업검사센터('20. 상반기 예정)</p>
<p><input type="checkbox"/> &lt; 신 설 &gt;</p>	

○ ( 기대효과 ) 국민안전과 권리보호 확대 및 운영효율성 제고

○ ( 시행일 ) '20. 7. 1.( 「관세법」 제246조의3 개정)



### 31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산정

(수출입물류과, 042-481-7637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<input type="checkbox"/>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 산정에 사용하는 매출액 기준</p> <p>• 보세판매장의 <u>매장별 매출액*</u>을 기준으로 특허수수료율을 적용</p> <p>* 세관신고 매출액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 산정 기준 <u>구체화·명확화</u></p> <p>• <u>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</u>을 기준으로 특허수수료율 적용</p>

○ ( 기대효과 )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기준 명확성 확보

○ ( 시행일 ) '20. 1. 1.( 「관세법」 제176조의2 개정)

### 32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도 신설

(특수통관과, 042-481-7854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<input type="checkbox"/>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“보세운송업자등”)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보세운송업자</li> <li>-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화물운송업자</li> <li>- 외국무역선 등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</li> <li>- 외국무역선 등에 선용품 등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</li> <li>- 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</li> <li>- 외국무역선 등에 서류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</li> <li>- <u>&lt; 신 설 &gt;</u></li> </ul> </li> </ul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보세운송업자등에 <u>구매대행업체 추가</u>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 margin: 10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1.2em;">&lt; 좌 동 &gt;</p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u>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</u></li> </ul>

○ ( 기대효과 ) 수입물품의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·감독과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를 등록하는 제도 마련

○ ( 시행일 ) '21. 7. 1.( 「관세법」 제222조 개정)